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경상보조금의 5% 이상을 장애인정치발전을 위해 사용〉
■ 서미화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125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황 승 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미화의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4. 6.
3. 회 부 일 : 2026. 4.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에게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고보조금 중 선거보조금의 경우 여성·장애인·청년추천보조금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경상보조금에서는 여성·청년 외에 장애인정치발전을 위한 용도를 규정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고,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하여 경상보조금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의 5% 이상을 장애인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장애인정치발전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규정하여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등 장애인정치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의 5% 이상을 장애인 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장애인정치발전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① (생략)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에 의한 정책연구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하여야 하며,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100분의 5 이상은 <u>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u>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u>여성정치발전을 위한</u>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 ----- ----- ----- ----- <u>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u> , 100분의 5 이상은 <u>장애인정치발전을 위하여</u> ----- ----- <u>여성정치발전 및 장애인정치발전</u> ----- -----.
1. <u>여성정책 관련 정책개발비</u>	1. <u>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u>
2. <u>여성 공직선거 후보자 지원 선거관계경비</u>	가. <u>여성정책 관련 정책개발비</u>
3. <u>여성정치인 발굴 및 교육 관련 경비</u>	나. <u>여성 공직선거 후보자 지원 선거관계경비</u>
4. <u>양성평등의식 제고 등을 위한 당원 교육 관련 경비</u>	다. <u>여성정치인 발굴 및 교육 관련 경비</u>
	라. <u>양성평등의식 제고 등을 위</u>

5. <u>여성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정치활동 지원 관련 경비</u> 6. <u>그 밖에 여성정치발전에 필요한 활동비, 인건비 등의 경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비</u> ③ · ④ (생략)	<u>한 당원 교육 관련 경비</u> 마. <u>여성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정치활동 지원 관련 경비</u> 바. <u>그 밖에 여성정치발전에 필요한 활동비, 인건비 등의 경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비</u> 2. <u>장애인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u> 가. <u>장애인정책 관련 정책개발비</u> 나. <u>장애인 공직선거 후보자 지원 선거관계경비</u> 다. <u>장애인정치인 발굴 및 교육 관련 경비</u> 라. <u>장애인·비장애인 평등의식 제고 등을 위한 당원 교육 관련 경비</u> 마. <u>장애인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정치활동 지원 관련 경비</u> 바. <u>그 밖에 장애인정치발전에 필요한 활동비, 인건비 등의 경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비</u> ③ · ④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은 정치자금의 종류를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등으로 구분하고, 이중 보조금은 정당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의미함.¹⁾

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제22대 총선)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6년 1,211원)를 곱하여 총액을 산정한 후 각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과, 전국단위 선거가 있는 연도에 추가로 지급하는 선거보조금 등으로 구분됨.²⁾

이중 경상보조금은 지급 당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정당별로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5석 미만 또는 의석이 없는 정당 중 최근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서 법 제27조제2항각호의 득표수 비율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 총액의 2%씩을 배분·지급하며,

1) **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치자금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당비

나. 후원금

다. 기탁금

라. 보조금

마.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바.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

사. 바목에 열거된 사람(정당 및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6. "보조금"이라 함은 정당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2) **법 제25조(보조금의 계상)** ① 국가는 정당에 대한 보조금으로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한 금액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실시로 선거권자 총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변경된 선거권자 총수를 기준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공직선거법」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각 선거(동시지방선거는 하나의 선거로 본다)마다 보조금 계상단가를 추가한 금액을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계상단가는 전년도 보조금 계상단가에 「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증감한 금액으로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이하 "경상보조금"이라 한다)은 매년 분기별로 균등분할하여 정당에 지급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이하 "선거보조금"이라 한다)은 당해 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정당에 지급한다.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최근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함.³⁾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정당별로 배분된 총액을 분기별 균등 분할하여 2월·5월·8월·11월의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각 정당에 지급하는데, 2026년 5월 7개 정당에 지급된 경상보조금 총액은 약 134억원임.

《 2026년도 2분기 경상보조금 지급 내역 》

(단위: 천원)

합계 (279석)	더불어민주당 (152석)	국민의힘 (106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4석)	기본소득당 (1석)	사회민주당 (1석)
13,405,773	5,963,867	5,584,735	1,153,721	361,595	322,154	9,850	9,850
100%	44.49%	41.66%	8.61%	2.70%	2.40%	0.07%	0.07%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관위, 2분기 경상보조금 약 134억 원 7개 정당에 지급” 보도자료를 토대로 재가공

- 3) **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 ①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지급 당시 「국회법」 제33조(교섭단체)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그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배분·지급한다.
- ② 보조금 지급 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지급대상이 아닌 정당으로서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5씩을,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100분의 2씩을 배분·지급한다.
1.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
 2.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당으로서 의석을 가진 정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0.5 이상인 정당
 3.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정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지급액을 제외한 잔여분 중 100분의 50은 지급 당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그 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고, 그 잔여분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또한 정당은 지급된 경상보조금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하여야 하고,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함.⁴⁾⁵⁾

이와 같은 제한규정은 경상보조금의 일정 부분을 정책개발과 여성 및 청년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정당 간 정책경쟁을 활성화하고 여성과 청년의 정치참여를 확대하여 이들의 정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그런데, 여성과 청년처럼 장애인의 경우에도 이들의 정치참여 확대 및 관련 정책개발 지원을 위해 경상보조금의 일부를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나,⁶⁾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의 5% 이상을 장애인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장애인정치발전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규정하려는 것임.

4) **법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②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에 의한 정책연구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하여야 하며,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100분의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각 호 생략>

5) 10% 이상 여성정치발전 사용 규정은 2004년 「정치자금예관법률」 개정을 통해, 5% 이상 청년정치발전 사용 규정은 2022년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음.

6) 2013년 제19대 국회 당시에도 최동익의원 대표발의로 경상보조금 총액 중 100분의 5 이상을 장애인의 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안 제28조제2항제2호각목의 내용들인 장애인 공직선거 후보자 지원, 장애인 관련 정책개발 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의 정치적 대표성이 강화되고, 이들의 정책수요가 정치과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다만, 경상보조금의 사용처가 이미 정책연구소(30% 이상), 시·도당(10% 이상), 여성(10% 이상), 청년(5%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5% 이상)까지 추가되는 경우 경상보조금의 60% 이상의 용도가 법으로 제한되는바, 정당의 예산집행의 유연성 및 자율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경상보조금의 사용처 관련 현행과 개정안의 비교 》

구분	현행	개정안
경상보조금 사용처	정책연구소(30% 이상) 시·도당(10% 이상) 여성정치발전(10% 이상) 청년정치발전(5% 이상)	장애인정치발전(5% 이상)
		그 외 집행가능 금액(40% 이하)
	그 외 집행가능 금액(45% 이하)	

※ 관련 규정 등을 참고하여 작성

또한 개정안이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 사용 용도를 규정한 법 제28조제2항각호를 원용하여 장애인정치발전 경상보조금의

사용 용도를 규정하려는바, 청년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사용 용도도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함께 필요할 것임.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입법취지와 도입 시 예상되는 부작용, 관계 조항의 연계개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상보조금의 배분 방식은 정당의 자율성, 장애인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 제도의 도입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며,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사용 용도와 같이 장애인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규정하는 것은 정치자금 사용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청년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함께 규정할 필요성 또한 고려하여야 할 것이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3